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. 1. 1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.세출에 이입한다.